

「기업예금안전거래서비스 이용약관」

1. 개정시행일: 2016. 10. 10.

2. 개정내용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
| <p>제1조~제12조 (내용 생략)</p> <p>제 13조(면책 사항) 은행은 귀책사유가 없는 한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기기, 회선장애 및 전산시스템 장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정전, 화재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고객이 지정한 모바일폰과 서비스프로그램의 호환불가 또는 모바일폰의 고장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고객이 기업뱅킹 Light의 아이디(ID), 접속비밀번호, 승인비밀번호, 모바일접속비밀번호 등 접근수단 및 통신매체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도용, 위조, 변조 기타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 5. 고객의 신청대로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객 이외의 제 3자가 통지된 내용을 인지한 경우 <p>제14조~제15조 (내용 생략)</p> | <p>제1조~제12조 (좌동)</p> <p>제 13조(면책 사항)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기기, 회선장애 및 전산시스템 장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정전, 화재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고객이 지정한 모바일폰과 서비스프로그램의 호환불가 또는 모바일폰의 고장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고객이 기업뱅킹 Light의 아이디(ID), 접속비밀번호, 승인비밀번호, 모바일접속비밀번호 등 접근수단 및 통신매체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도용, 위조, 변조 기타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 단, 이용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은행이 책임을 집니다. 5. 고객의 신청대로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객 이외의 제 3자가 통지된 내용을 인지한 경우 <p>제14조~제15조 (좌동)</p> | <p>문구 수정</p> <p>단서 조항 추가</p> |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적용